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응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1 발의연월일: 2020. 6. 26.

발 의 자:조응천·한준호·박찬대

최종윤・윤관석・홍기원

권칠승 · 이용우 · 김용민

오영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수단간 연계 효율화가 필요합니다.

하지만 지자체 주도로 추진 중인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지자체 간 이견이 있거나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일쑤 입니다. 이에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환승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에 국고를 지원함 으로써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시키고자 합니다.

또한, 환승센터와 버스정류소 등 개별환승시설 등의 건설, 개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지자체 이외에도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(안 제10조제9항 및 제10항).

법률 제 호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9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·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.
- ① 광역교통시설 중 환승센터·복합환승센터(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을 포함한다)를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(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 | 제10조(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 |
| 정 지원 등) ① ~ ⑧ (생 략) | 정 지원 등) ① ~ ⑧ (현행과 |
| |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|
| <u><신 설></u> |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|
| |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 |
| | 기관 및 제3호에 따른 지방공 |
| | 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·복합 |
| | 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 |
| | 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 |
| | 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 |
| | <u>할 수 있다.</u> |
| | <u>⑩ 광역교통시설 중 환승센터·</u> |
| | 복합환승센터(버스정류소 등 |
| | 개별 환승시설을 포함한다)를 |
| |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대 |
| |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|
| |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 |
| | 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|
| |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|
| | 있다. |